

# 김포시 시민소통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3558호
----------	--------

제출년월일 2024. 12. .  
제출자 김포시장

## 1. 제안이유

-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발전적인 소통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민소통 포인트제 주요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시민소통 포인트제 적용 대상(안 제3조)  
다. 포인트 관리 및 부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반영(비용추계서 별첨)  
다.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10. 24. ~ 11. 13. (20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부서협의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중앙 및 도 관련부서 : 해당 없음

## 김포시 시민소통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소통 포인트제”란 시민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인트”란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시민소통 포인트제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시민소통 포인트제를 총괄 관리·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시민소통 포인트를 신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주소 또는 사업장을 김포시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포인트 관리)** ① 시장은 시민소통 포인트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포인트는 관리부서의 장이 관리하고, 포인트 발생 사업부서의 장은 참여자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포인트 부여 등)** ① 시장은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설문조사, 제안, 설명회 등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포인트를 부여한다.

②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를 포함한다.

③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은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④ 포인트 부여 기준 및 부여 제외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시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

③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포인트 소멸기준)** 포인트는 적립된 날부터 5년 동안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자치행정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자치행정과장 이 상 익
	담 당 성 명	행정팀장 윤 선 영
	담 당 자 전 화	지방행정주사보 이 현 정(☎2533)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주민참여의 확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조례발안제도를 보완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김포시 시민소통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제6조

####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민소통 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 총 예산 : 12,000천원 (인센티브 10,000천원 + 홍보비 2,000천원)

### 2. 비용추계 : 미작성

###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과장 이상익 팀장 윤선영